

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('16.1월~'17.1월)

1. 규제비용관리제 적용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규제 사무명	연간균등순비용
폐지·완화	협찬고지 규제 완화	-935
	영세사업자 재산 상황 제출의무 면제	-9
계		-944

2. 규제비용관리제 적용규제 목록

□ 폐지·완화 규제

○ 협찬고지 규제완화

피규제자	지상파텔레비전사업자,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
규제 요지	•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·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상품명으로 협찬고지를 허용 • 방송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소 협찬을 받은 경우 방송프로그램 내 해당 부분에서 '지방자치단체명'의 협찬주명 고지 허용
규제 조문	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나목, 제8조제6항, 제9조제6항, 제10조제6항, 제11조제6항
비용편익분석결과	연간균등순비용 -935백만원

○ 영세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제출의무 면제

피규제자	방송채널사용사업자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
규제 요지	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(방송채널사용사업자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)는 재산상황 제출을 면제
규제 조문	방송법 제98조의2,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2
비용편익분석결과	연간균등순비용 -9백만원

3. 기타

- 방송통신 전문가·학계·KDI 등으로 구성된 규제비용분석TF 운영
- 규제비용분석 시 KISDI 등 방송통신 연구기관과 공동 검토